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2일, 부승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의원)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

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 개정안은 다음의 점에서 긍정적임. 첫째, 현행은 우주항공산업을 위한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인해 현재 민간 보증·보험 상품에 의존하는데, 민간 보증기관의 경우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료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의 보험·보증료로 인해 우주항공산업체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함.

둘째, 우주보험(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경우 현재 특정 해외 보험 중개사의 독점을 통한 재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뿐만 아니라 국부 및 기술 국외유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함.

셋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아 현행 방산공제조합원의 상당수¹⁾가 우주항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 민간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

또한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대상 사업 범위·규모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다만, 방산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안처럼 제21조제1항에 제5의2호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21조제1항 각목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 현재 방위산업공제조합 228개 조합원 중 우주항공산업분야 방산·민수 중복 수행업체는 2026년 2월 기준 총 74개 (약32.5%)로 전체 조합 출자액 중 약 73%의 지분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자료: 방위산업공제조합).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